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표 22] <개정 2021. 12. 31.>

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(제60조제2항관련)

항 목	세 목	합 격	약간 불량	불 량
핸들 조작	조 작 량	580도	480～580도	480도 미만
	조 작 력	3.0kg	2.2～3.0kg	2.2kg 미만
	지속시간	10초 이상	10초 미만	
	소요시간	5초 이내	5초 초과	
(발)브레이크 조작	압 력	20kg	15kg	15kg 미만
	지속시간	10초 이상	10초 미만	
	반응시간	0.72초	0.72～0.84초	0.84초 초과
	정 확 성	정확	부정확	
수동식 브레이크 조작	압 력	8kg	6kg	6kg 미만
	지속시간	10초 이상	10초 미만	
액셀러레이터 조작	압 력	4kg	3kg	3kg 미만
	지속시간	10초	10초 미만	
	정 확 성	정확	부정확	
수동식 액셀러레이터 조작	견 인 력	3.1kg	2.4kg	2.4kg 미만
	지속시간	10초	10초 미만	
사이드브레이크 작	견 인 력	12kg	9kg	9kg 미만
	정 확 성	정확	부정확	

(주)

1. 항목별로 약간 불량 시에는 3회까지 반복 평가하여 1회 이상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이를 불량으로 판정한다.
2. 위 표의 항목 중 신체상태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  가.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: 핸들 조작,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, 수동식 액셀러레이터 조작, 사이드브레이크 조작
   나. 양쪽다리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및 양쪽다리 엉덩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: (발)브레이크 조작, 액셀러레이터 조작